WTO의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GATS의 논의를 중심으로-

尹 昌 仁*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Ⅱ. 전자상거래 성장전망
Ⅲ.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
Ⅳ. 국제적 논의 동향
Ⅴ.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Ⅵ. 전자상거래 논의 전망 및 시사점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1. 전자상거래의 정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전자상거래[1]를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여타 사회 현상의 정의에서 그러하듯 아직 통일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자상거래는 정의되고 있다. WTO는 '원거리 통신네트웍을 통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the production, advertising, sale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으로 정의[2]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3]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貿易投資政策室 硏究委員.

1) 商去來는 영리적인 성격을 강조하므로 非營利的인 거래를 제외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거래에는 비영리적인 거래, 예를 들면 정부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이용도 포함되므로 '전자상거래' 보다는 '전자거래'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의 선택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 즉 상거래에 주목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선택한다.

2)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3, p.3.

를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the buying and selling of products and services over the Internet)'로 정의[4]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컴퓨터네트웍을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

전자상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 따라 혹은 거래단계에서 활용되는 전자적 수단의 활용정도에 따라 그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거래조합에 따라 정부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기업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와 기업·소비자간 거래(business to consumer)가 자주 언급된다.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5]이 대표적인 기업간 거래이다. EDI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간 거래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가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또 하나의 거래형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를 온라인 작업으로 끝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상거래 과정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탐색 및 비교, 주문 및 대금지불 그리고 상품 혹은 서비스의 배송 혹은 인도와 애프터서비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단계 모두를 온라인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래를 온라인거래(on-line transaction)라고 하며 마지막 단계인

---

3) 인터넷은 ① 개방형 프로토콜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②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③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자원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다.

4) Kosiur, David,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Microsoft Press, 1997, p.2.

5) EDI는 '전자자료교환' 또는 '전자서류교환'이라고도 하며 기업간의 거래에 따르는 각종 자료(서류양식)를 정형화, 표준화시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컴퓨터간에 직접 전송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함. 이 과정을 통하여 협력업체 및 대리점 등 거래선과 종이 없는 거래(paperless trade)를 이루어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서류의 신속한 유통이 가능케 되었다. 과거에는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사설망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OECD. 1998, g. p.5. 참조.

배송 혹은 인도단계에서 상품의 물리적인 배송작업이 필요한 거래를 오프라인 거래(off-line transaction)라고 한다. 온라인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 소위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7] 혹은 온라인제품(on-line product)에는 소프트웨어, 음악, 오락, 컨설팅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정 디지털제품은 음반 혹은 소프트웨어와 같이 온라인 전송도 가능하지만 동일 내용의 유체물 상품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에 어려움을 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혹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범을 필요로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WTO의 논의 현황에서 자세히 다룬다.

3. 전자상거래의 특징

전자상거래는 단순하게 제품의 거래수단만은 아니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 선택의 확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구매과정의 정비 및 원가절감 등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한다.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주문접수, 대금청구 및 수납, 제품의 인도와 고객지원 등에 전자상거래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 하드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회선의 가격하락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쇼핑몰 구축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상거래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는 여러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열람되는 광고와 제품카탈로그를 통하여 제품의 주문을 받게 한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은 중간 유통경로의 도움 없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매장까지 직접 나가지 않고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필요로 하는 제

7) 문자, 소리, 영상 등으로 구분되는 정보는 신문, 잡지, 책, 사진 등과 같은 원자형태와 텔레비전, 라디오, CD 등과 같은 전자신호 형태로 전달된다. 전자신호 형태는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형태로 나뉜다. 원자형태 정보는 저장하고 검색하기 쉬운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화라고 한다. 아날로그 신호형태는 파장을 가진 신호이며 디지털 신호는 온오프(on-off) 방식 혹은 0 혹은 1로 표시되는 비트(bit) 형태를 취한다. 디지털화 되면 문자, 소리, 영상 모두 단일 기호로 표현되어 하나의 통신망을 경유해 이동할 수 있다.

품을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제품의 경우는 거래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및 물류비용이 발생치 않지만 오프라인거래의 경우는 배송과정에서 택배업체 등이 참여하게 되어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 상거래는 영업행위가 직영대리점 혹은 판매대리점 등을 통하여 제한된 지역범위 내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년 내내 끊임 없이 계속된다. 지리적인 제한이 없이 세계 각지의 새로운 판매상과 상업적인 관계 정립이 가능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8]

구매과정에서 고객은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등재하고 구매를 일으킨다. 계속 수록되는 특정 고객의 제품 구매기록을 통하여 개별 고객의 구매특성 파악은 물론 각 제품에 대한 수요추세 및 계절성 등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표-1]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비교

구 분	전자상거래	전통적 상거래
유통경로	기업↔소비자	기업↔도매상↔소매상↔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전세계	일부 지역
영업시간	24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고객수요 파악	온라인으로 수시수집, 내부축적, 재입력 필요 없는 디지털데이타	영업사원이 수집 수집된 자료의 재입력 필요
마케팅 활동	쌍방향 통신을 통한 일대일 상호작용 마케팅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가 약한 일방적인 마케팅
고객 대응	고객 특성의 변화를 신속히 포착하여 즉각적 대응 가능	고객 특성변화에 대한 신속한 포착이 어려워 대응 지연
판매 거점	가상공간	물리적 판매공간

자료 : (사)커머스넷 코리아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

8) 라우터 등 통신장비회사로 유명한 시스코(Cisco)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1997 년 봄부터 추진하였다. 기술적 지원, 문제해결 상담 인력, 소프트웨어의 배포, 마케팅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시켰으며 대고객 서비스의 약 70 %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997 년 운영비의 약 17.5 % 인 3 억 6 천 3 백만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억 8 천만 달러를 절감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 부문이 가장 큰 실적을 올렸다(http://www.ecommerce.gov/emerging.htm 참조).

더구나 축적되는 자료는 디지털 자료이기에 별도의 전환작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축적된 개인별 인구통계 특성 및 구매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고객에게 특정 제품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다시 고객은 이에 회신하는 쌍방향 통신이 있게된다. 기존 상거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대일 마케팅[9]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점포운영비 부담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상공간에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구매과정에서 축적되는 자료는 동시에 고객의 총체적 구매패턴 변화등을 조기에 분석하고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존립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그 효익을 계량화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기에 기존 상거래에서 유지되던 제품의 진열매장 혹은 서비스 전시장이 불필요하다.

Ⅱ. 전자상거래 성장전망

1. 인터넷 이용자 추정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의 향후 성장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1993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WW)[10]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인터넷의 확장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디오의 시청자가 6,000만 명에 이르는데 30년, 텔레비젼은 15년이 소요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된 인터넷(그림 1 참조)은 약 1억 명의 확보에 겨우 3년 정도 소요된 것으

9) 일반적으로 소매업 분야에서는 편의성, 가격 및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경쟁한다. 인터넷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객에 관한 많은 정보, 예컨대 인구통계, 구매품목 및 가격대, 라이프스타일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토대로 특정 고객별로 주문관리(customization)를 추진하는 접근방법을 일대일마케팅이라고 한다.

10) 기존의 문서나 정보를 단순한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던 것에 비하여 WWW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 Makup Language)를 이용하여 문자는 물론 음성, 화상, 동화상 등을 제공하고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사이트 연결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로 보도[11]되는 예에서 보듯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1] 인터넷 호스트 컴퓨터의 성장과 전자상거래 발전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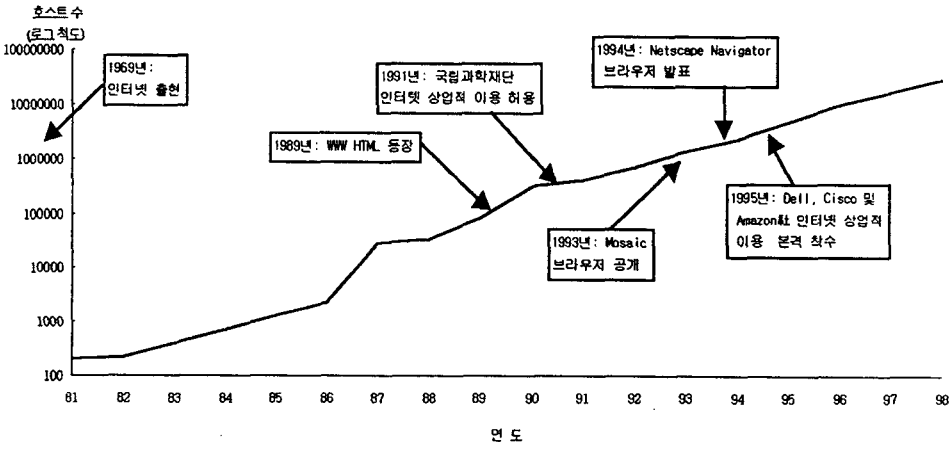

자료원 : OECD

인터넷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한 추정은 전문기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9 년 5 월 현재 미국, 아시아 및 유럽에서 1 억 7 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1 년에는 약 3 억 명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12]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의 성장전망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예측은 그 정의에 따라 거래에 포함될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성기준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발표기관들의 예측치는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자료교환(EDI) 관련 실적통계는 기업간의 자료이므로 외부에

11) The 'Click Here' Economy, *Business Week,* June 22, 1998.
12) 본 절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사용된 통계자료는 OECD, 1998 b. 참조.

정확하게 공개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는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전자상거래 규모의 예측에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조사기관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향후 3-4년 내에 크게 증대하리라고 본다는 점이다.

다른 예측에 따르면 기업간 인터넷 거래는 1996-97 기간중 매 6개월마다 2배씩 신장되었으며, 1998년 중에는 3~4개월 주기로 2배씩 증가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4,34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 이외에 전자자료교환(EDI) 및 PC통신 등 네트웍을 통한 2001년의 전체 수입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보기술 관련 자료 전문기관인 IDC의 예측에 따르면 2003년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5억 명에 이르고 거래규모는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2] 전자상거래 시장 예측(1995-2003)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WWW 접속장비(백만대)	149.5	221.1	305.9	412.6	537.3	721.6
〃 사용자 (〃 명)	142.2	196.1	256.4	327.3	398.5	502.4
접속자당 구매액(연간,달러)	1,635	2,321	3,046	3,994	5,479	7,216
전자상거래 지출액(백만달러)	50,431	111,359	217,806	396,121	733,631	1,317,337

자료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현재 전자상거래는 태아단계에 있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기술과 시장 움직임에 있어 거래의 기본적인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지불시스템의 안정 정도, 소비자 및 개인정보의 보호, 인터넷 접속비용의 과다 및 사용수준이 그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가 갖는 거래의 편의성과 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13]의 방법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소매업 유통경로의 하나인 통신판매와 유사한 판매경로로 전락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대량생산(mass-production)과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고객화(customization)의 합성어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개인별 니즈의 충족, 즉 일대일 마케팅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량생산에서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Ⅲ.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

1. 논의의 발단

1997년 7월 미국이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래 전자상거래는 범세계적인 관심 분야로 대두되었다. 동 계획은 전자거래에 관한 5가지 원칙[14]과 재정, 법률 및 시장접근의 세 가지 이슈에 관련되는 9개 사안[15]에 걸친 세계적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이다. 이후 미국은 이 방안을 골격으로 세계적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현안 중 지적재산권 및 특허에 관해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기본통신 및 무역과 관세에 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안 및 표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논의 대상

인터넷에의 접속은 전세계적인 통신망에의 연결이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이미 전세계적인 상거래를 의미한

---

14) 전자상거래는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하고 글로벌 거래에 따라 국제적 협력이 강조되며, 정부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기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지의 전자상거래 5가지 원칙은 ① 민간부문에 의한 주도, ②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자제, ③ 정부의 관여 범위는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법률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 ④ 정부의 인터넷 특성 인식, ⑤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15) 인터넷을 완전한 경쟁과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으로 꽃피는 시장이 되도록 하려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사안에는 재정적 분야에 관세·조세 및 전자적 지불, 법률적 분야에 통상거래규칙, 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 그리고 시장접근 분야에 통신인프라·정보기술, 내용물과 기술적 표준의 9개 이슈가 포함된다.

다.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가 구현되고 활성화되려면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처리 혹은 해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조세관할권,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컨텐트 규제, 상거래 규범 등 제부문에 대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기존 상거래와 조화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창출이 요구된다. 이하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논의의 대상을 생각해본다.

(1) 관세 및 조세[16]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현재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규정하고 무관세에 대한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 확인 및 암호화 결과로 거래 추적의 어려움이 있고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조세관할권 등 문제로 인하여 전통적인 조세 개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각국 정부는 세수 확보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이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익 증대를 저해할 것임.

(3) 정보내용 규제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외설정보 유통

16) 상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 지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항상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우 특정 경제행위로 창출되는 소득을 확인하고 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하고, 관세 등을 포함한 소비세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및 불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외설 정보 유통금지 방안이 주요 과제이다. 인터넷 내용 선별기술표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및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민간부문 사업자의 행동수칙으로 제정,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4) 소비자 보호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사기·기만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도 있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간단하지 않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사기, 기만 및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느 쪽의 법률을 적용할 것이며 어느 지역의 법원이 재판을 관할할 것인가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다.

(5)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에서 무단복제가 용이한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권리의 신설, 기술조치 및 권리 관리정보, 온라인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 이외에 상표(trade mark)의 보호 및 시행 및 관련 신기술과 동 기술에의 접근 등 또한 주요 쟁점이다. 상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도메인명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과제이다.

(6) 보안

군사 및 외교분야에 국한되었던 보안의 개념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민간분야의 정보보안 문제로 나타난다. 보안기술의 핵심은 암호기술이며,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기술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암호의 자유로운 사용은 국가 안보 및 공공복리, 법집행력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7) 전자서명 및 인증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얼굴을 대하지 않는 사용자간 신뢰 확보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의사표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기술이 필요하다. 전자서명기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도에 바탕을 두고, 관련 정보 및 사용자 인증을 시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인증기관의 기능이 필요하다.

Ⅳ. 국제적 논의 동향

1. 개황

전자상거래의 발전 전망이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밝게 보이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도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저돌적인 추진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이 다소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전자상거래의 자유화 추진과 관련 민간주도, 비합리적인 규제의 철폐 등 기본원칙에는 미국과 의견의 일치를 보이나 내국세, 개인정보 등 이슈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는 물론 지역협력기구에서 전자상거래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용에 앞서 가는 선진국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OECD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논의 국제기구이다. 그 밖에도 WT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전자공학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그리고 지역기구로는 APEC, 유럽연합(EU) 등이 전자상거래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상호 중복적인 활동도 발견되지만 각 기구별로 자체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춰 담당 영역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의 제거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국제적인 규범제정 논의로 귀결된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조성에 국한하고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기본원칙에 있어 각 기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에 기초하고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도 유사하다.

본 장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국제적 통상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WTO를 비롯하여 OECD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의 활동을 살펴본다. 국제통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WTO의 전자상거래 활동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별도로 나눈다.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활동

국제기구 중 OECD는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산하의 각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Working Parties)을 통하여 조세, 소비자 및 프라이버시, 암호, 인증 및 거래확인, 정보통신기반 및 그 접속 등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전제로 한 활동은 아니지만 개별 이슈에 대한 최초의 기본적인 논의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다. 1980년에 채택한 사생활가이드라인은 현재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현재까지 3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17]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재정위원회(CFA), 정보통신컴퓨터위원회(ICCP) 소비자정책위원회(CP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 작업반을 별도 구성하여 이슈별 지침을 개발하여 국제적 논의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1997년 OECD각료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세계화과정의 기본적 원동력(driving forces)으로 규정하고 전자상거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목한 바 있다. 동시에 각료들은 OECD에 이들 문제가 일련의 일관된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17) 사생활가이드라인(1980),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선언(1985),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1992), 암호화정책 가이드라인(1997).

있도록 그 함의를 점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1997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의 지도자들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에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OECD가 민간부문과 함께 이 도전에 대하여 공동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OECD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확대에서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동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률적 제도의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OECD 업계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가 참여하였다.

OECD는 핀란드 투르크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1998년 10월 7-9일 기간 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29개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의 각료 및 민간, 관련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잠재력 실현(A Borderless World: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의 확립,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기반구조(infrastructure)의 확충,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극대화 등이 논의되었다.

오타와 각료급 전자상거래회의에서는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 기업, 노동계, 소비자 및 각종 이익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협조 및 공동노력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세계적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방지,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과 재판관할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문제, 상대국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세 가지의 각료선언 채택과 국제적 거래에 대한 조세체계의 확립에 관한 보고서 승인이 있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 그리고 기타 민간부문 및 국제기구의 행동계획도 검토되었다.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영향, 암호화기술, 중소기업, Y2K 문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9건의 배경문서[18]가 각료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동 회의 결과인 각료 선언

및 실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후속 회의가 1999년 10월 파리에서 속개되었다. 정부, 민간 기업, 국제기구, 소비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 등이 참석한 이 파리포럼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Towards Convergence of Stakeholder Interest)'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오타와 회의 이후 진전사항 점검 및 차기 정책 이슈 모색이 목적이었다. 오타와 각료회의의 4대 주제인 '소비자와 사용자의 신뢰구축',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 '디지털 시장의 기본규칙 정립' 그리고 '잠재가치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핵심인 소비자보호에 있어 OECD에서 준비중인 '소비자 보호지침'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지가 있어 1999년 중에 채택될 것이라는 것과 인증 및 전자서명 등 후속 연구의 착수가 발표되었다.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은 온라인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작업이 추진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반인 인프라 확대에는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업 자율규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국가, 기업, 시민 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파리포럼은 전자상거래가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OECD의 작업이 현재까지의 공통된 원칙과 지침작성 단계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이행 및 구현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OECD는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확산에 필요한 국제적 원칙의 수립과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확산을 저해하는 제문제에 대한 대안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민간부문 및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다각적

---

18) 9가지의 배경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암호기술 규제 목록 : 회원국의 암호기술 수출·입 통제, 사용규제 등에 관한 법·제도를 조사정리한 보고서, (2) 경제적 영향 :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3) 정보기반의 역할 :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 촉진, 시장진입, 상호연계성, 인터넷 체증 해소, 가격결정, 시스템 장애 극복 등을 다룬 보고서, (4) 개인정보보호 선언 배경 보고서 : 개인정보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5) 소비자보호 보고서 : 소비자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6) 인증제도 목록 :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정책 및 활동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7)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시장과 관련된 시장추세 분석, 시장개발의 변수, 장애해소를 다룬 보고서, (8) Y2K 문제 :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점, 경제적 파급효과, 각국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 (9)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 중소기업이 갖는 장단점 분석, 정보기술활용방법 및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보고서.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전개는 다양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갖고 있는 OECD의 구조 및 고유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현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율적 규제 및 법제화 주장 등에 대한 이견,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을 정부가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수확보와 관련되는 상거래 그 자체의 식별 및 거래 발생장소의 확정문제 등 많은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범세계적 공동규범 체계의 확립을 서두르는 미국과 주요 이슈에서 이견을 보이는 유럽연합 및 여타 회원국의 구도로 볼 때 이견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OECD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제문제를 규명하고 특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영향을 밝히는데 이상적인 포럼이다. 회원국의 동질성, 객관적 경제 분석능력 및 폭넓은 작업 범위를 배경으로 하는 OECD의 활동 결과는 전자상거래 정책입안자,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논의

UNCITRAL의 과업은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관련 법률의 부적절한 내용이나 차이로 야기되는 국제무역상의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UNCITRAL은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작성한 국제적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율할 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을 1996년 5월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모범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전자계약의 이행을 규율할 계약의 기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서류의 유효성 조건을 정의하고 법적, 상업적 목적의 전자서명 수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IEC는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준비하고 발간한다. 전자공학, 자기학 및 전자자기학 등을 포함하는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표준에 대한 적합성 판정절차(assessment of conformity to standards)의 평가와 같은 표준화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있어서 국제적 협조를 추진한다. IEC가 개발한 표준

에는 컴퓨터 하드웨어표준이 포함된다.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간의 공동기술위원회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에 관한 이슈를 다루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 식별카드, 보안, 데이터 캡쳐(capture), 데이터 관리, 암호, 인증 등의 표준을 설정한다.

ITU는 각국이 사용하는 모든 대기권 내외의 주파수 범위에 관한 조약 및 규제를 채택하며 사용 기술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원거리 통신시스템의 상호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표준을 개발한다. 전자상거래에 관련해서 ITU는 멀티미디어 터미널에 대한 프라이버시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보안과 인증서 발급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ITU는 원거리 통신서비스 및 기반구조를 확대를 추진하는 개도국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컴퓨터 상호간의 메시지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자료교환(EDI)에 대한 유엔 표준인 UN/EDIFACT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행정·상거래, 전송 절차 및 실무 지원센터(Center for the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UN/CEFACT)를 통하여 이 분야의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방법론 및 도구를 개발하고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의 활용을 분석한다.

UNCTAD는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관심과 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면, 기업, 사업촉진 및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Enterprise, Business Facilitation, and Development)는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인력개발,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전자상거래 참여, 전자상거래의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이슈를 논의하여 왔다. UNCTAD의 무역거점(Trade Point)프로그램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기업 및 시장개발, 잠재적 고객 및 공급업체, 무역규제 및 요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 해외무역기구, 상공회의소, 화물운송업자, 운송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해외무역거래 참여기관들을 하나의 물리적 혹은 가상공간에 묶는 무역 참여기관간 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19]

19) WTO. 1998 b.

V.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

1. 종합적 작업프로그램의 추진

국제무역질서 논의 무대인 WTO[20]는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8년 2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codification)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3월에는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이슈가 WTO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어 5월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21]을 채택한 바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제품의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각료선언에서는 일반이사회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 검토를 위한 종합적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채택된 작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우선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계획 자체와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이슈를 일반이사회 의제(standing-items)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1999년 3월말까지 작업계획 이행을 위한 중간점검회의를 갖고 산하 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22]는 작업결과를

---

20) 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그 핵심은 세계 다수의 교역국가가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포함된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다. 협정문은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지만 그 목표는 제품 생산자, 수출입업자의 상행위를 돕는데 있다. 그 속성상 국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도 WTO 협정문을 통하여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1)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참조.

동년 7월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작업과정에서 타 국제기구의 활동을 고려하고 주제의 이해를 도모코자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1998년 3월 WTO 사무국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법적 문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전자상거래와 WTO와의 관계를 다룬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이라는 보고서[23]을 발표한 바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서비스이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상품이사회는 전자적 전송을 상품의 교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른 관망, 지적재산권이사회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공조로 추진되었다. 이들 산하기구의 논의는 일반이사회에 활동보고서를 1999년 7월 제출함으로서 종료되었으며 향후의 작업여부 및 방법은 3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주요 협상 대상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WTO는 물론 민간 및 학계 등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제출된 각 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의 논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WTO는 전자상거래를 GATS 중심으로 논의를 압축하고 있다. 산하 기구의 논의 횟수[24]에서 보듯 전자상거래 논의는 GATS 규범을 다루는 서비스교역이사회에

---

22) 서비스이사회는 GATS 법률시스템에서의 상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4가지 공급형태의 적용, 전자적 전송서비스에 대한 관세, 프라이버시 및 공중윤리의 보호 및 부정행위의 예방(GATS 제14조), 경쟁(GATS 제8조 및 9조), 원거리통신에 대한 개방약속과 인터넷 접속간의 관계, 전자적 형태와 동시에 물리적 형태로 인도 가능한 제품의 분류에 대하여, 상품교역이사회는 GATT 1994 규정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측면 작업프로그램, 특히 전자적 수단이 무역절차를 단순화시키는지 여부, 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대한 각료선언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서 야기되는 관련 문제, GATT 1994 제7조의 이행협정의 적용에서의 관세평가문제, 조화체계(Harmonized System)에서의 상품 분류, 표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받았다. 지적재산권이사회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을 고려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문제를 점검한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영향, 도메인명과 인터넷 주소 등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보호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용이한 행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고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개도국의 경제, 금융, 개발요구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개발의 의미를 검토한다.

23) WTO. 1998 a.

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GATS 협정은 서비스 공급수단을 구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술중립적이라고 보아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부 이견은 있으나, GATS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상품교역이사회 다수의 회원국은 상품교역이사회에 위임된 전자상거래 대부분 측면에 대하여 전자전송이 어떤 경우에 서비스, 상품 혹은 그 밖의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논의동향으로 미루어 전자상거래를 상품의 거래로 정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재산권이사회의 논의는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거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사회의 논의는 관련 전문기관인 WIPO의 활동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어 WTO 자체 내의 논의[25]는 그렇게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향후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GATS와 TRIPs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TRIPs의 논의는 WIPO의 활동과 연계될 것이므로 순수한 의미의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서비스교역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서비스교역이사회에 초점을 맞춰 협상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인 전자상거래의 분류, 과세, 공급형태, 규제, 프라이버시 및 지적재산권 등을 살펴본다.

(1) 분류(classification)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무역 분류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이 어느 경우에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며, 어느 경우에 상품과 유사해지고 어느 경우에 상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일종의 복합물(hybrid)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이 쟁점이 어떻게 결론

24) 서비스교역이사회는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반면 상품교역이사회는 3차례, 지적재산권이사회는 4차례 그리고 무역개발위원회는 1차례의 세미나 개최에 그쳤다.

25) 인터넷 저작권의 TRIPs 협정 내 편입에 대하여 선진국은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된 인터넷 관련 저작권 및 인접권(자료의 복제 및 전송)을 TRIPs 협정 내 편입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하여는 현재 TRIPs 10조(데이타베이스 보호) 2항[1]에 의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나 데이터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 선진국은 설령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나는 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및 무역분쟁 해결에 주요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별개로 진화되어온 상품교역 및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은 서로 유사한 점도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첫 고려는 GATT와 GATS 규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이다. 대체로 몇 가지의 차이점이 지적된다.[26]

먼저 분야별 구체적인 개방약속에 의존하는 GATS와 달리 GATT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강조한다. 둘째, GATS는 정부가 시장접근 있어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량적 제한이 허용되나 GATT에서는 일부 예외[27]를 제외하고는 수량적 제한이 금지된다. 셋째, 조세체계에 있어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이 양허표상의 내국민대우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GATS는 관세 혹은 과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GATT는 관세률이 영세율이 아닌 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한다. 넷째, GATT는 국경간 상품의 교역에 집중하지만 GATS는 국경간의 교역 이외에 서비스 교역의 일부로 자연인의 이동 및 상업적 주재와 고정사업장도 고려한다. GATT에는 정부조달 및 세이프가드 등 규정이 있지만 GATS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GATS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정[28]이 있는 반면 GATT에는 제한규정이 없다. 그밖에 기술적 규제와 제품표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자적 전송을 상품도 서비스도 아닌 복합물로 규정하는 것은 GATS와 GATT가 아닌 새로운 무역규범 협상을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29]

WTO 사무국은 이러한 전자전송 이슈에 대하여 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1998년 초의 사무국 보고서에는 만일 인터넷상의 어떠한 거래가 상품거래나 서비스거래 어느 거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기존 규범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기존 분류체계는 때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논의를 본

---

26) WTO, 1998, p,50.

27) 모든 수량조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스크린 쿼타,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에는 개별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된다.

28) 제 8 조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 'Members recognize that certain business practices of service supplier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Article Ⅷ, may restrain competition and thereby restrict trade in services.'

29) 이에 대하여 특히 민간부문 서비스 조직은 협상 기간 중 수년간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이의 수용을 거부한다. 미국서비스산업연합회(U.S.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와 세계기업연맹(Alliance for Global Business) 모두 혼합물 인정, 새로운 규범작성 및 협상개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질적으로 무시하였다.

주요 관심사는 모든 거래를 기존 WTO 법체제 내에 수용하는 것이다. 사무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국경간 거래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적 전송을 GATS 영역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제안도 GATS 협정과 회원국가가 약속한 양허 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협상은 인터넷상에서 판매, 이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 및 음악 등의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및 분석에 따른 결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조세(taxation)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공급되건 아니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관세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WTO 2차 각료이사회에서 결의된 관세유예(moratorium) 상태의 영구적 연장과 이의 법제화(codification)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이러한 결정이 조세수입과 재정정책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무관세 관행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법제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이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운로드된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또는 전자적 형태를 취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가 제안된 과세유예에 포함되는가이다. 환언하면 무관세 원칙이 국내에서도 형태와 관계 없이 동종제품 모두에 적용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EU는 과세지불유예는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30]

30) WTO 협상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터넷 온라인 거래 추적이, 특히 지불기록이 암호화되어 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거래에 대한 판매세와 부가가치세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혹은 판매세는 제품이 소비되는 곳에서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지역에서 근접한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아래 최종판매자에게 과세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왔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에서는 가상공간의 구매장소와 소비지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가정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인터넷 거래의 공급장소는 소비자가 확정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전자상거래 기업은 모든 상거래 국가에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거나 각 국가에 재무대리인(financial agent)을 등록해야 한다. 어느 대안도 특히 중소기업은 상당한 거래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 이행에 대한 감시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범위 : 공급형태(modes of supply)

GATS 제 1 조(범위 및 정의)에서 정하는 네 가지 공급형태[31]는 원래 개별적 서비스거래의 공급형태의 제시라기보다는 서비스 무역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되었다. 네 가지 공급형태는 서비스가 국가별로 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GATS의 범위를 정의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S하의 개방약속 일정에 대한 기초로 활용된다.

공급형태는 서비스 공급시점에서의 소비자 및 공급자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구분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GATS의 공급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1990 년대 초에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어렵지 않게 서비스의 공급형태 구분이 가능하였다. 국경간 공급인 1 형태와 해외소비인 2 형태가 상업적 주재인 3 형태와 공급자의 주재인 4 형태에 비하여 해당되는 부문이 거의 없던 때였다. 1, 2 형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기에는 시장규제와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1 형태는 원거리통신과 방송, 2형태는 관광여행과 같은 분야별 예의 열거로 충분하였다. 원거리통신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기존의 공급방식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주로 1 형태와 2 형태에 관련되는데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구분이 불명확해진 것이다. 소비자의 물리적 위치가 항상 서

---

31) 서비스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교역은 상품의 국경간 수출입과 같은 생산물의 국경간 이동, 생산요소의 이동에 의한 교역을 모두 포괄하며, 서비스 협정 제 1 조 2 항은 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Article I Scope and Definition
1.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a service:
(a)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국경간 이동
(b)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해외소비
(c)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상업적 주재
(d)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자연인 이동.

비스의 공급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서비스의 공급장소를 명확히 판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공급형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거래 발생장소에 대한 결정이 관련 규제당국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 1형태 혹은 2형태 정의는 사법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온라인 도박이나 외설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정책, 상업계약과 의무에 관련한 효력과 실행을 담당할 사법권의 결정 등에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전자상거래의 규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규제 없는 환경에서 발달해 왔으나 GATS 상의 규제가 향후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2] 특히 제6조(국내규제), 제8조와 9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와 통신부속서와 제14조(일반적 예외)가 관련된다. 전자상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규제문제는 ① 인터넷은 물론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현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정비하고 심화시킬지, ② 전자상거래 특정 쟁점에 대하여 규제를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 규제내용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야 하는 지로 나눌 수 있다.

(가) 6조의 고려사항

GATS 제6조는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는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규제는 서비스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32) 전자상거래의 규제에 대하여 실질적 측면 및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 규제 측면에서 보면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인 프라이버시, 공중윤리와 문화정책, 미성년자 보호, 문서인증, 지불체제의 안전성, 암호화, 도메인명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WTO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적되는 것은 주요 산업국가 특히 미국의 민간부문이 WTO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착잡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너무도 혁명적이고 중요하여 기존의 WTO 규범에 따라 적용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전자상거래 문제에 맞춰진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지난 5년 동안의 눈부신 인터넷 발전은 기술적인 발전 이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면적 사고의 결과로 미국은 인터넷 활동을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다가오는 협상에 있어서도 양면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적용될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판단, ② 컨텐트에 적용되는 규제와 통신전송에 적용되는 규제의 구분에 대한 장단점 혹은 합리성 검토, ③ 국내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가 검토 대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나) 제 8 조, 제 9 조와 통신부속서 및 준거문서(Referanc Papers)[33]

제 8 조의 핵심은 통신망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기본통신서비스가 아직 독점화 되어있는 국가의 공급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독점적 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되는 여타 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8 조의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통신부속서와 준거문서는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깊이를 더하였다. 예컨대 통신부속서는 무차별을 일반적 명제로 하고 있으며 WTO 각 회원국의 분야별 내국민대우 약속 여부에 개의치 않으며, 특히 공중통신전송망에의 접속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투명성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망 주요 공급자는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인터넷의 물리적인 사용환경을 제한하여 동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업체를 통신망의 질 및 요율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시의적절한 상호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정부의 권리는 인정되지만 어느 공급자에 대하여 경쟁적 이익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5) 지적재산권 문제

지식기반 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촉진되려면 판매자는 자신의

33) 준거문서는 통신망 상호접속의 조건, 정보의 오용, 허가기준, 교차지원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의 방지에 관련되는 조항 등 주요 통신서비스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이 도둑당하지 않고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더욱 요청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은 저작권, 특허 및 상표이다.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음반, 도서출판 등의 업계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출현으로 컴팩디스크는 약간의 비용 부담으로 완벽한 재생산이 가능하고 원고는 순식간에 복사되어 배포될 수 있게 되어 창의적인 작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유통업자에게 특정 지역 내의 독점적 판매권을 판매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무국경성(borderless nature)은 지역에 기반을 두는 이러한 판매권의 보호와 근본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WIPO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2월 WIPO는 디지털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여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을 개정하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의 조인을 추진하였다. 이들 조약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3대 과제인 기술적 보호(technological protection), 저작권 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및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명에도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상표(trade mark) 영역에서 도메인명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합당한 도메인명을 먼저 등록한 개인 혹은 기업은 현재 협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간의 노력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으로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6)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전자상거래의 가용성, 비밀보장, 자료의 신뢰도 등의 문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판매·구매자 모두가 사기와 오용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거래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메시지 송·수신자의 신원확인, 메시지의 인증, 지불거절의 금지와 지불정보의 암호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본적 요구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디지털 서명 등 기술적 노력 이루어지고 있으며 GATS 14 조(일반적 예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와 자료보안에 민간주도의 활동이 장려되고 있으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의 보급은 법률집행기관의 범죄추적을 어렵게 하기 대문에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범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암호화 기술의 이용 및 수출입에 대해 그다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기술의 보급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Ⅵ. 전자상거래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새로운 밀레니엄의 국제통상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주제이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운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어떻게 변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그 국제상거래로서의 법적 기본규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확립되는 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활성화 양상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이슈가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기술적 중립성, 인터넷과 통신부속서, 국내규제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다. WTO 3 차 시애틀 각료회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결렬된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것은 적어도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 무관세관행유지는 연장되고 전자상거래 통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WTO의 논의도 어떤 형태이건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슈 중 특히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결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WTO의 협정에 대하여 이견이 내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확산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WTO 협정과 전자상거래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장벽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하여 회원국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소프트웨어, 서적 혹은 영화 등 적용 등 물리적 대체물을 갖는 디지털 컨텐트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이미 약속한 서비스 부문 양허 내용의 인터넷 적용에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기존 WTO협정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것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자제할 것을 주장한다. 대부분 회원국은 WTO 협정이 전자상거래 부문에 적용된다는 일반적 서술에는 합의하나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부과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특히 개도국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았으며 '불필요'의 판단은 매우 모호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작업프로그램의 연장방법에 대하여 비협상그룹을 운영하는 방안과 기존 산하기구를 통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하자는 방안이 대립되고 있으나 비협상그룹의 운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의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는 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1998년 12월 이후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와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추진된 작업프로그램에서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적절히 다뤄지지 않았던 여러 분야의 이슈(cross-cutting issues)가 심도 있고 신속하게 논의될 것이다. 과거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참여한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업무범위에 국한된 전자상거래 측면만을 검토하였지 서비스 혹은 물리적 실체를 갖는 전자전송의 분류 등 협정 일부가 중복되는 이슈는 논의하지 않았다.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중심이 향후 GATS를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기술중립성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양허한 각 서비스 부문이 전자적으로 수행될 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지? 기술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 양허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규제 측면에서 규제할 대상이 있는 지? 있다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GATT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의 제한 금지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때는 어떤 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를 면밀한 점검이 요청된다.

국제규범이 없이도 전자상거래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국제적인 교역 형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자상거래 국제협의에 참여하고 그 국제적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정책연구 94-05, 1994,

尹昌仁,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제임스마틴(정철용역), 사이버기업, 서울 : 대교출판, 1998.

한철수. 1994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서울 : 다산출판사.

Kosiur, Darid,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N.Y. : Microsoft Press, 1997.

Mathiesen, Michael, *Marketing on the Internet.* Gulf Breeze, FL : Maximum Press, 1997.

OECD, *OECD Annual Report.* Paris ; OECD, 1997.

_____, a. "Foreign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Note." TD/TC/WP/RD(97)1, 1997.

_____, b. "Trade Policy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TD/TC(97)12, 1997.

_____, a.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TD/TC(98)9, 1998.

_____, b.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DSTI/ICCP/IE(98)3/FINAL, 1998.

_____, c. "Electronic commerce : Trade Policy Aspects of digitized Products Provided on the Internet." TD/TC/WP(98)30, 1998.

_____, d. "Electronic commerce : Outline of Proposed Approach to Follow-up on Certain Trade Policy Aspects." TD/TC/WP(98)46, 1998.

_____, 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 1998.

_____, f.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 Part1, 1998.

_____, g. "OECD Minesteria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SG/EC(98)3, 1998.

Treese, Winfield G., and Stewart Lawrence C. *Designing Systems for Internet Commerce.* Massachusetts : Addison Wesley, 1998.

WTO, a.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WTO, 1998.

_____, b.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G/C/W/128, 1998.

_____, various documents.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Issues in the WTO and Implications to Korea

Yoon, Chang In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 can help firms make use of the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markets. Electronic commerce has broad implications for future trade. These implications include the effect on trade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resent and future trading system de jure and de facto allows electronic commerce to realize its potentials as an alternative or a complement to conventional trade.

The comprehensive work program had been implemented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before the Seattle 3rd Ministerial Conference which was suspended. In general, Member countries recognized the need to ensure that electronic commerce in all its forms is conducted in full conformity with WTO principles and rules. But, there are still major issues to be solved such as access to relevant electronic systems, competition policy in telecomnunications services, WTO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IPRs, the clarification of a number of key concepts and definitions, etc.

Key Words : WTO, Electronic Commerce